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1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1년 6월 11일

3. 제안이유

-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수립(안)이 완료되어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목표연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3,403.14km²(1시5군1출장소)
- 계획인구 : 1,368천명 (현재 951천명)
- 내용적 범위
 - 광역도시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
 - 광역도시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계획
 -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계획
 - 광역교통체계에 관한 계획
 -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계획
 - 집행 및 관리계획

5. 검토의견

-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도시계획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본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안)을 검토한 바

광역권 도시계획은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억제하여야 할 분야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발을 억제해야 할 지역이나 사업을 지역별로 분명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각 지역마다 개발 및 시설에 제약을 두어야 할 항목 제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한편 광역시설은 개발을 위한 호의적 시설도 중요하지만 각 기초단체에 꼭 필요하면서도 독자적 시설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예를 들면 화장장,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공동묘지 등의 혐오시설에 대한 장기계획이 미비하다고 보여지며, 혐오시설 설치 기초단체에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발전 시설계획 및 재정지원 방안 등 전략적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또한 발굴한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향의 제시가 없어 계획의 신뢰성이 부족한 인상이며, 계획과제를 언제, 어떻게,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등이 보완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됨.